

교양필수(외국어능력 영역) 교과목 대체인정 기준표(제8조제3항 관련)

해당과목	공인 외국어 능력 시험	기 준	시 행 처	대체인정 제외학과 (전공,복수전공)
실용영어 I, II	New TEPS	264점 이상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	-
	TOEIC	700점 이상	YBM NET	
	TOEFL (PBT)	529점 이상	한미교육위원단	
	TOEFL (CBT)	197점 이상	한미교육위원단	
	TOEFL (iBT)	71점 이상	한미교육위원단	
	TOEIC Speaking	120점 이상	YBM NET	
	OPIc	IM1 이상	ACTFL	
실용일본어 I, II	JPT	600점 이상	YBM NET	일어일문학과 외국어자율전공학부 (일본어)
	JLPT	3급/N3 이상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실용러시아어 I, II	Torfl	기본단계 이상	한국슬라브문화연구원	러시아어과 외국어자율전공학부 (러시아어) 러시아중앙아시아학과
실용스페인어 I, II	Dele	B1 이상	스페인 문화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외국어자율전공학부 (스페인어)
	Flex	2B 이상	대한상공회의소	
실용중국어 I, II	新 HSK	5급 195점 이상	중국국가한반	중어중국학과 외국어자율전공학부 (중국어) 중국어중국학과
	HSK 회화	중급 80점 이상	중국국가한반	

- ※ 실용영어를 제외한 기타 외국어는 2010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대체인정 가능
- ※ 대체인정 기준에 따라 미취득한 해당 교과목 전체에 대하여 대체인정 가능
- ※ 학점은 0학점으로 인정되며 성적은 PASS로 처리됨
- ※ 교양필수과목 대체인정은 1회에 한하여 인정 가능
- ※ 공인성적표는 우리 대학 입학 후 취득한 유효기간 내의 성적표만 인정함
- ※ 외국어자율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세부전공이 정해지기 전 외국어영역 대체인정 제한이 없으며, 외국어영역을 미이수하고 세부전공이 정해진 경우 세부전공 언어에 해당하는 외국어영역 과목은 대체인정 불가